

제 760 호  
1980. 3. 15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정 상 천  
면 장: 문화공보관 심 계 선  
전화 75-7834  
인 쇄: 서울특별시통합발간실  
전화 75-6090

# 시 보

## 차 례

◎ 조 계	
제 1409 호:	서울특별시주차장신설및관리조례..... 3
제 1410 호:	서울특별시덕성초등학교신설조례중개정조례..... 10
◎ 포 서	
제 92 호:	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..... 10
◎ 공 고	
제 71 호:	도시계획사업(소매시장)실시계획공람공고..... 11
제 73 호:	도시계획시설(도로)실시계획공람공고..... 12
제 74 호:	도시계획시설(도로)실시계획공람공고..... 13
제 76 호:	신설구원시청사위치공고..... 14

<이면 계속>

1. 시 공문장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원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# 서울특별시

제 11 호 ( 서 내 분 구 공 고 ) : 공 인 개 각 공 고 ..... 15

◎ 예 구

제 3 호 : 석 울 특 별 서 시 유 계 산 관 리 및 처 분 업 무 시 행 세 칙 ..... 16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 
1980.3.15

○ 서울특별시조례 제 1409 호

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

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주차장법 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 (이하 "령"이라 한다)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법 및 명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상한액은 법 제 9 조 및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.

②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자가 출차시에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

때에는 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1 항의 요금과 동일한 액의 가산금을 부과한다.

제 3 조 (주차거부금지)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수 없다  
1.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
2.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 
3.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

제 2 장 노상주차장

제 4 조 (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방법) "파킹메타"의 계기를 설치할 때까지는 주차시간시에 주차료를 교부한후 출차할때에 주차시간에 따른 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공용시간) 노상주차장의 공용시간은 야간통행금지 해제후 1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통행금지시작 1시간전까지의 범위내에서 정한외 공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때에는 제한기간, 구역, 사유등을 당해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주차구획선 표시등)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구획은 20미터×5.0

미터로 하되 주차장 여건에 따라 표준주차구획의 장·폭에서 0.5 미터를 가감할수 있으며 구획선의 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7 조 (노상주차장의 표지)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 3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 조의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한다.

②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규격등은 "별지제 2 호서식"과 같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(차종별 징수금액을 명시)
2.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
3. 주차장의 공용시간
4. 기타 주의사항

제 8 조 (노상주차장 이용자의 책임)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주차한 자동차를 자기책임으로 관리 (멸실 또는 훼손등) 하여야 한다.

제 3 장 노외주차장

제 9 조 (노외주차장설치의요시) 시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공용을 개시하고자 할때

에는 그 사용개시, 명칭, 위치, 규모, 공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

제 10 조 (요금의 환부기준) 제 4 조 제 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환부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환부액을 정한다.

1. 회수권: 회수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수 없는 회수권에 대한 요금을 환부
2. 정기권: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은 일산하여 환부

제 11 조 (노외주차장의 표지) ①노외주차장의 표지는 "별지제 1 호서식"과 같이하되 시영주차장의 표지에는 상단에 저울특별시 표시를 한다.

②노외주차장 이용의 안내표지 규격등은 제 9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

제 4 장 건축물부설주차장

제 12 조 (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)

①도시계획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는 아래표의 기준에 의한 주차장을 그 건축물 또는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.

(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육내주차면적을 제외하며 주차대수 1대미만은 버린다. 이하 본조에서 같다.

건축물의용도	주차장 정비지구	기 타 지 구	
		상업지역	타지역
관광집회시설, 위락시설 판매시설, 호텔, 업무시설	연면적 150㎡ 마다 1대	연면적 150㎡ 마다 1대	연면적 400㎡ 마다 1대

건축물의 용도	주차장 정비지구	기 타 지 구	
		상업지역	타 지역
		(연면적 1,000㎡ 이상에 한함)	(연면적 2,000㎡ 이상에 한함)
숙박시설(호텔제외) 중 합병원, 전시시설, 공항 시설, 공동주택, 운동시 설, 창고시설, 종교시설	연면적 150㎡ 마다 1대	연면적 200㎡ 마다 1대 (연면적 1,000㎡ 이상에 한함)	위와 같음
기타용도의 건축물	연면적 250㎡ 마다 1대	연면적 400㎡ 마다 1대 (연면적 2,000㎡ 이상에 한함)	위와 같음

②법 제 19조 제 3항 및 연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에 상당하는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은 제 1항의 기준외에 그 기준외 3분의 2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(기존 특정건물의 경우는 그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를 포함한다)에 주차장의 설치를 명할수 있다.

③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있어서 소요 주차대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육외에 주차할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육외주차장 비율의 적용으로 인하여 아래 전제물에 미달하게

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육외주차장 비율을 완화하여 아래 전제물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.

구 분	전 제 물
4대문내 간선도로변	40 %
4대문내 간선도로변이외	45 %
기 타 지 역	50 %

④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재개발구역 및 건축법 제 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등에 있어서 건축물별 주차장확보 대신에 지구별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의거 지구별 공동주차장을 설치할수 있다.

제 13조 (자동차의 진입로등) ①건축

물 부설주차장의 진입로는 법시행규  
칙 제 3 조 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  
에 의한 노의주차장의 출입구 설치  
기준에 의한다.

(2)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자동차진입로(지하  
도 진출입하는 경사로 기타 이와 유사한  
것을 포함한다)의 폭은 다음 각호에 정하  
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- 1. 진입로가 1차선인경우: 3.5미터이상
- 2. 진입로가 2차선인경우: 5.5미터이상

(3)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1개소의 박  
닥면적의 합계가 1,000평방미터 이  
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따  
로 설치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 기존건축물을 위한 노상주차의 목

례) ① 노상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한  
지역중 영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 
주차장 부설명령을 받은 기존 건축물의 소  
유자에게 시장은 변경부설주차시설의 확  
보 조건부로 주차용의 도로점용을 허가  
하여 잠정적으로 그 건축물의 부  
설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할수 있다

(2) 시장은 당해지역의 주차수요에 비추어  
주차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 
될 경우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 
아니하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  
여도 조례 제 12 조의 기준에 의한 부

설주차장 또는 인근주차장이 확보  
될때까지 주차용의 도로점용을 허  
가 할 수 있다.

(3)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 
주차장의 연간 도로점용료는 서울  
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규정에  
불구하고 인접대지의 감정가격의  
100분의10으로 하되 1년이상 계속  
사용하고자할 경우에는 매 1년 경과시  
마다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리 수  
준에 달할때까지 감정가격의 100  
분의3을 가산 적용한다.

제 15 조 ( 시행규칙 ) 이 조례시행에  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 
정한다.

부 칙

① ( 시행일 ) 이 조례는 공포한 날  
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 폐지조례 ) 서울특별시 조례 제  
1063 호 ( 76.9.1 ) 서울특별시 주차  
장 정비지구 건축조례는 이조례  
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.

③ ( 경과조치 ) 이조례 시행 당시 서  
울특별시 주차장 정비지구 건축조  
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은 이 조례  
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.

(별표)		주차장요금표				
		(단위: 원)				
지역별	차종별	주차요금 (30분당)	회수권제 (1일)	정기권제(월)		
				전일제	주간제	야간제
1 급지	보통자동차	200	2,400	60,000	30,000	30,000
	소형자동차	150	1,800	45,000	22,500	22,500
2 급지	보통자동차	150	1,800	45,000	22,500	22,500
	소형자동차	100	1,200	30,000	15,000	15,000
비 고		<p>1. 급지구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2.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30분으로 본다.</p> <p>3. 회수권제 및 정기권제의 사용은 노외주차장에 한한다.</p> <p>4. 주간은 08:00부터 20:00까지, 야간은 20:00부터 익일 08:00까지로 한다.</p> <p>5. 차종별구분은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(별표1)에 의하되 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톤차는 제외한다. 다만, 대형특수자동차는 보통자동차에, 소형특수자동차는 소형자동차에 준하여 취급한다.</p>				

(별지제1호서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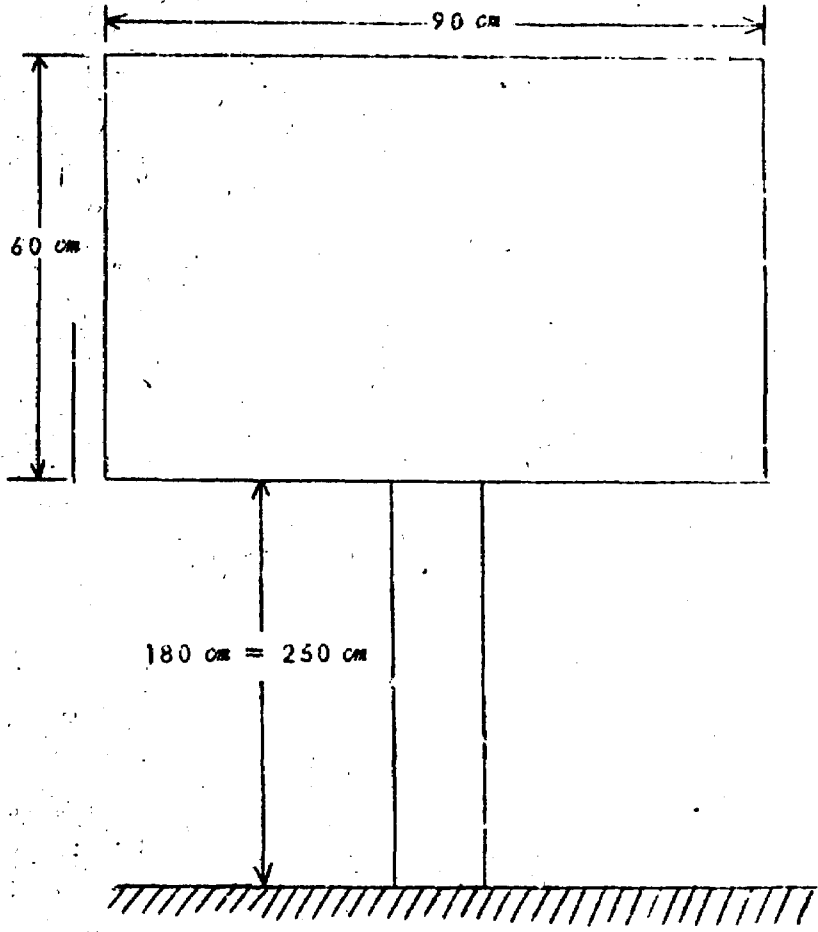
노의 주차장표지





(별지 제 2 호 서식)

주차장이용 안내표지



비 고

구 분	재 로	색 채	
		바 탕	글 씨 ( 고 덕 )
노상 주차장	철 판	흰 색	검 정 색
노외 주차장	목 판	흰 색	검 정 색

<p>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"서울 특별시립청소년직업학교설치조례중 개정 정조례"를 이에 공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0. 3.17</p> <p>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회교육감 이창갑인</p>	<p>◎서울특별시 조례 제 1410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</p> <p>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학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의2(명칭과 위치)중 발표할 다음과 같이 한다.</p>
---	---

명 칭	위 치
<p>1. 아현중학교부설 아현청소년직업학교</p> <p>2.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 영등포청소년직업학교</p>	<p>가포구 아현동 328</p> <p>영등포구 영등포동 5 가 48</p>

<p>부 칙 (80.4.1)</p> <p>이 조례는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10px auto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고 시</p> </div>	<p>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0. 3. 13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 장</p>
--	--

<p>◎서울특별시 고시 제 92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</p> <p>1. 서울시고시 제 479 호(79.11.21)로 도시계획사업(학교)결정 및 동고시 제 527 호(79.12.24)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(학교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(79.12.10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</p>	<p>1. 사업의시행지: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3-1의19번</p> <p>2. 사업의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학교) 서울구의국민학교</p> <p>3. 사업의면적: 13,153 평방미터(4,006평)</p> <p>4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: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회교육감</p> <p>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</p> <p>가. 사업의착수년월일: 시행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</p>
--	---

나. 준공예정년월일: 착공일로 부터 1년이내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(별첨).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(별첨생략)

**공 고**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71 호

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) 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7 호 (79.12.11) 및 동 고시 제 6 호 (80.1.10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: 신정제 2소매시장)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(시행허가) 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

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3.14.  
서울특별시 강

(공 랑 개 요)

1. 사업시행지: 강서구신정동 201-1, 3  
2. 사업의종류: 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)  
명칭: 신정 제 2소매시장  
3. 사업의규모: 2,148㎡ (649.77평)  
4. 사업시행자: 강서구신정동 201-1 신평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동원  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
가. 착수에정일: 80. 4.  
나. 준공예정일: 81. 4.  
6. 사용할 토지: 별첨소재  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14 조의 관계인 주소, 성명:

사 용 할 토 지

지 번	지 목	면 적	소 유 자
강서구신정동 201-1	대 지	1,562㎡	강서구신정동 201-1 신평실업(주) 이 동 원
강서구신정동 201-3	"	586	"
계		2,148	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73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시고사제 200호(79.5.12)로 변경고시된 성산대로 건설공사 중 접부분 각각정리 구간내에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제 25조 및 동법제 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.
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  
가. 공고장소 : 마포구청계서판

나. 공고기간 : 1980.3.18-1980.3.31. (14일간)  
1980. 3. 18.  
서울특별시

<공 랑 개 요>

1. 사업장위치 : 마포구성산동 56의10, 11호 및 51의 21호
2. 사업명칭 : 성산대로건설공사(접부분 각각정리)
3. 사업규모 : 각각 716㎡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
5.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 : 사업인기일 - 80.12.31
6. 사용또는수용할토지 : 별첨토지조서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및 성명 :

토 지 조 서

순위	지 번	지목	등급	면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1	마포구성산동 56-10	대	71	173.1㎡	종로구서린동 111	김영근외 2
2	" 56-11	"	71	26.5㎡	"	"
3	" 51-21	"	71	158.4㎡	마포구성산동 181	이은계
			계	358㎡		
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74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(도로)실시계획공람공고</p> <p>1. 서울시고시제 51호('80.2.14)로 고시된 도봉산 자연공원전입로 개 설공사구간내에 저촉 편입되는 토 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락 하고자 도시계획법제 25 조 및 동법 제 25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.</p> <p>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 가. 공고장소: 도봉구청 계서판 나. 공고기간: 1980.3.18-1980.3. 31 ( 14 일간 ) 1980. 3. 18. 서울특별시장</p> <p>&lt;공 랑 개 요&gt;</p> <p>1. 사업장위치: 도봉구도봉동 273 번지 - 417 번지</p> <p>2. 사업명칭: 도봉산 자연공원 전입 로 개설공사</p>	<p>3. 사업규모: 가. 폭 = 25 m 나. 연장 = 600 m</p> <p>4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청</p> <p>5. 사업의 착수및 준공예정: 사업인가 일 - 80.12.31</p> <p>6. 사용토근수용할토지: 별첨토지조서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, 성명: 별첨.</p> <p>사 업 개 회 서</p> <p>1. 사업위치: 도봉구도봉동 273-도봉동 417</p> <p>2. 사업명칭: 도봉산자연공원 전입로 개설공사</p> <p>3. 사업개요: 도로 폭 25 m, 연 장 600 m</p> <p>4. 사업시행자: 도봉구청장</p> <p>5. 사업시행기간: 사업인가일 - 1980. 12.31</p> <p>6. 재원조서: 사업비: 572,400,000원 공사비: 322,400,000* 보상비: 50,000,000*</p> <p>7. 토지소유자 주소, 성명: 별첨</p> <p>8. 건물소유자주소, 성명: 저촉 건물 없음</p> <p>9. 설계서(평면도): 별첨생략</p> <p>10. 지적도: 별첨생략</p>
---	---

공사토지가격조서					
소재지	지목	수용면적	소 유 자		비 고
			주 소	성명	
도봉동 272-3	전	80	도봉 401	도봉원	
" 271-5	"	359	강남역삼등산 75-38	김동환	
" 275-4	"	467	충인동 56-96	유수연	
" 275-5	"	17	도봉 163-2	권병욱	
" 282-199	대	124	" 204	송석중	
" 279-1	대	21	관악구 동작동 307	백남승	
			반포아파트 94-508		
" 282-200	전	327	도봉 349	김수현	
" 282-201	"	807	동소문 4가 247	김연진	
" 282-205	"	40	"	"	
" 282-202	대	389	도봉 282-44	양주협	
" 282-203	대	360	" 282-144	이향주	
" 282-18	전	122	동소문 4가 247	김연진	
" 282-2	전	660	중구 신당동 333-74	이진숙	
" 산 10	임야	740	동대문구 방우동 469-56	정탁후	

<p>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76 호</p> <p>신선구 임시청사 위치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구로구 및 동작구청 임시청사 위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다 음</p> <p>1. 위 치</p>	<p>○ 구로구청 -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489-4</p> <p>○ 동작구청 -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9-6</p> <p>2. 개 청 일 1980년 4월 1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0. 4. 1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	---

◎ 시대문구청 공고제 11 호  
공인 개각 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  
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장적인 및  
제인을 개각 하엿기 동조례 제 9 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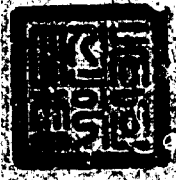







에 의거 공표한다.




1980 . 3  
시 대 문 구 청 장

1 . 개각사용년월일 : 1980 . 3 . 20  
09:00

2 . 개각된 적인 및 제인의 인영 :  
다음

공 인 의 인 영

의 영	 	의 영	 
공인영	대신동장인 및 개인	공인영	홍제 2동장인 및 개인
의 영	 	의 영	 
공인영	홍은 2동장인 및 개인	공인영	홍은 4동장인 및 개인

인  영	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예 규</div> <p>서울특별시 사유재산관리 및 처분 업무 요령중 개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0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정 상 친 인</p>
공인명	북가좌 2 동장인	◎ 서울특별시예규 3 호
인  영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사유재산관리 및 처분업무시행세칙</p> <p>제 4 조 제 2 항중 구술장소장·울·구청 장·으로 하고·요령·을 삭제한다. 제 8 조 제 3 항 제 2 호중 공업단지 관리청·을 삭제한다.</p>
공인명	북아현 3 동장인	제 9 조 제 1 항중 기부채납 을 하고자하는 자·를 기부채납을 하고자 할때· 로 한다.
인  영		<p>제 1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 13 조 (사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) ① 관리자는 매년도 사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계획을 다음 각호에 따라 총괄자에게 제출한다. 1. 당해년도 관리처분 계획: 전년 도 12.30 2. 공매대상: 전반기 말일 3. 수취매각대상: 전월말</p>
공인명	연희 3 동계인	제 1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
제 14 조 (사용, 수익허가) ①법 제 57 조 제 2 항 및 영 제 62 조의 규정 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의 사용수익을 허가 (이하 "사용 수 익허가"라 한다) 할 때에는 지체없 이 시장 (참조 제무국장) 에게 보고 한다.

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목적에 한하며, 사용 수익허가 로 인해서 별도의 시권이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.

③사용수익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 계속 허 가하는 그 기간 만료 직전에 재사 용신청을 받아야 한다.

④사용 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.

1.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
2. 사용료 및 납부방법
3. 손해보험 증서 제출
4. 사용허가 표찰 부착
5. 허가 재산의 관리 및 보존 의무
6. 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수 허가자 부담

제 15 조 제 1 항중 "지속"을 삭제하 고 "분류하여"를 "분류"로 하며 제 2 항을 삭제하고 제 3 항을 제 2 항 으로 한다.

제 16 조 제 3 항과 제 4 항을 삭제하고

제 5 항을 제 3 항으로 한다.

제 17 조 제 1 항중 제 3 호를 삭제한다

제 18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규칙 제 135 조에 의한 대부신청 은 제 15 호 사식에 의한다.

제 19 조 제 1 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 2 호, 제 4 호의 실경자 및 실수요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

제 21 조 제 5 항중 "대부로는 대부기 간내에 전액납부 하여야 하며"를 "대부토를"로 한다.

제 2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2 조 (대부 및 매각 사무 취급)

①시유 갑종재산의 대부 및 매각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100 평미만의 점유 재산
2. 일백제 (27 평) 미만의 공기 토지 인접 토지주가 자기 재 산과 인접하여 일괄의 건물부 지로 사용될 토지
3. 폭이 7.6 미터 미만인 토지
4. 기타 시장이 위임하는 지

②27 평이상 100 평미만의 점유 재산으로서 매수 신청이 있을 때는 3개월 이상의 대부 기간을 거친 다음 매각한다.

제 2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3 조 (현상금의 징수) ①정당한 사유없이 시유재산을 점유하거나,

이물 사용 수익자에게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분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. 다만, 점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.

②제 1항의 대부분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 가격은 변상금 부과하기로 결정한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

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56조 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5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①잡종재산의 매각은 명 제 67조의 규정에 의한다. 다만, 일반경쟁 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재산이나, 일백제(27명)미만의 점유재산 및 영세 재산으로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강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

제 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6조 (매각대금의 납부 방법과 기간) ①규칙 제 136조의 2에

따라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대부분 본납액 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1할과 매각대금의 2할 이상을 1회 불입금으로 하고 잔액은 3년내에 균등하게 하여 년 2할 이자를 붙여 납부케 하며, 최종의 불입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충당하고, 그 잔액으로 한다.

②잔액의 매각대금을 기입내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년 3할 5분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. 대부분을 일체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별지 제 9호 15호 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, 제 17-1호 서식중 제 2조 제 2항의 「년 2할」을 「년 3할 5분」으로 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27명 미만 재산처리) 제 25조에 의한일대(27명)미만의 점유 및 영세재산에 대한 수의 계약시 대부분 원차 금액은 90일간 현재 매매계약 미 체결분부터 적용한다.

제 3조 (변상금 반환장수) 「국유재산법」을 불법 점유한 자가 반환 의무를 이행받거나, 이수하는 경우 제 26조에 의한 변상금은 반환 의무 기간에 걸쳐 반환하여야 한다.

( 제 9 호 서 식 )

매 도 증 서 교 부 대 장

일련 번호	당초매각재산표시			확정이전재산표시			매각	매수자	매각	완불	계약대	기
	재산표시	지목	평수	재산표시	지목	평수	금액	성명	일자	일자	강번호	고

( 서 식 제 15 호 )

시 유 재 산 매 부 수 신 청 서

1. 재산의 표시 :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 호
2. 재산의 종별 : 대
3. 점유 평수 : 평 휴
4. 매 부 목 적 :
5. 매 부 기 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 )
6. 대 부 료 또는 매 각 대 금 : 원 ( 평당 원 )

위 재산은 본인이 현재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민첩과 같이 관계 서류 첨부 신청하오니 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 년 월 일

주 소 :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 호

주민등록번호 :

성 명 :

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

첨 부 서 류 : 1 . 토 지 대 장 등 본 ( 구 청 발 행 ) 2 부

2 . 도 시 제 회 확 인 원 ( 구 청 발 행 ) 2 부

